

「스타트업-인재 매칭 지원사업」 협약서

- 과제명 : 2017년도 스타트업-인재 매칭 지원사업
- 협약기간 :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12개월)
- 총 사업비 : 지원금 180,000,000원(일금일역괄천만원정)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주형철)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오이씨랩 주식회사 기관장 성명 : 장 영 화

과제책임자 소속 : 오이씨랩 주식회사 직위 : 대표 성명 : 장 영 화

위 2017년도 '스타트업-인재 매칭 지원사업' 사업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된 '2017년도 스타트업-인재 매칭 지원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2017년도 스타트업 인재 매칭 공모사업 공고문에 공지한 내용' 및 '2017년 스타트업-인재 매칭 지원사업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제출안내(일자리확산팀-280, 2017.3.23.)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① 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및 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은 전 사업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서울특별시, (전담기관)에게 제출할 자료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사업비 중 지원금의 지급

나. 주관기관이 주관하는 과제에 대한 수시평가·최종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 각종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주관기관의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마. 그밖에 '가'호 부터 '라'호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리규정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주관기관이 출자하기로 한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마. 수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사.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아. 교육공간, 기자재 재료 활용·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자.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게 통보

③ 주관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과제의 성과 및 참여기업 및 참가자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요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사업수행기간 중 기수별로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 관리에 적절히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다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금 : 180,000,000원

※ 지원금 지급은 2회 분할하여 1차 50%(협약 시), 2차 50%(2017. 9월 경) 지급한다.

② SBA는 주관기관에게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재정사정, 민간부담현금 입금현황 등에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지원금을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비 중 제1항의 지원금 이외의 민간부담현금을 부담할 경우 해당 현금을 다음과 같이 출자하여야 하며, 민간부담현금 전액을 사업비통장에 입금하고 주관기관은 그 사본을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부담현금 : 0원

④ (전담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금의 지급시기·방법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나. SBA의 재정사정,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라.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주관기관이 제3항에 의한 민간부담현금 입금 확인서류를 협약체결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전담기관)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⑤ 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제1조의 사업 목표 및 내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출금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 ①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해 총괄적인 정산 실시의 책임을 지고 '사업비 정산'을 하며 (전담기관)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표본조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은 '서울시지분액 반납'에 의거하여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약금(불인정금액의 10%)을 포함한 서울시지분액을 (전담기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 ①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은 사업의 수행현황 및 성과활용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평가 및 결과조치)

- ① (전담기관)은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시평가, 최종평가, 현장실태조사 등 사업 제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사업별로 제시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한다.
- ③ (전담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정 표2. 제재 및 환수 기준'에 따른다.
- ④ (전담기관)은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에 대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사업결과의 활용 및 활용보고)

- ① (전담기관)은 '관리규정 제44조(사업결과의 활용)'에 의거하여 사업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전담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 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관리규정 제26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26조(협약의 변경)'에 의거하여 (전담기관)에게 보고 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은 SBA의 예산 사정, 평가결과, 관리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1조(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

- ① (전담기관)은 관리규정에서 정한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의 본 협약을 해약 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의 환수 등 관리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규정 제27조(협약의 해약) 및 관리규정 <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전담기관)은 제8조에 의거하여 사업평가 결과 주관기관의 사업수행에 대해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④ 주관기관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 받은 지원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전담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정산 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전담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①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 등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결과물을 (전담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가. 사업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그 밖에 주관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주관기관은 개발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전담기관)의 동 지원사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주관기관은 사업의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지식재산권을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서울산업진흥원(서울특별시), 스타트업-인재 매칭 지원사업, 수행과제명, 주관기관명, 수행기간; 등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상기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관련규정의 준수)

-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규정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협약체결 후 관리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서 제10조 3항에 의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같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 ③ 성과물의 귀속·유지·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르며, 관련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정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한 바를 따른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5조(기타)

- ① 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스타트업-인재 매칭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②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리규정 등 관계규정은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 ③ 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④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가 사업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가 관리규정에 위배되게 산정되었거나 부당·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담기관)은 부당 또는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기관은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2017년 4월 1일

전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전담기관장

주 형 철



주관기관

오이씨랩 주식회사

주관기관장

장 영 화



과제책임자

장 영 화

(서명)

